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근 도

나. 제안이유

공정위 소관 「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(조례·규칙) 개선율」이
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 지표로 확정('19.9.30.)됨에
따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조문을
개정하여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는 조문 삭제(안 제10조제5항)
(현행)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.

(개정)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
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「현장중심의
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·운영에 관한
규정」 (국무총리 훈령 제730호)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-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 -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조문을
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굴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써
사업활동 자율성 제고 및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
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